

□ 일본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요약

I. 동물약품협회의 의견

- 일본의 경우 가축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한 “동물약품”과 “사료첨가제” 그리고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료첨가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료는 “사료수급안정법”에 의하여 수급 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성과 품질관리는 사료와 사료첨가물이 불특정 다수의 가축에 대단위로 사용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안전성 확보와 품질보장을 위한 제반 세부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 보다 더욱 엄격히 규제 · 관리되고 있는 바,
- 농림부에서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후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을 입법예고하여 “보조사료”의 정의만을 자구 수정하여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분류코자 억지 하는 것보다는
- 현행 사료관리법은 수급목적으로 존치하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여 항생 · 항균제를 포함한 사료첨가제를 사료가 아닌 “사료첨가물”로 분류하여 것에 적극 찬성하며
-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사료의 품질이 보장되고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계 축소 또한 관련 업계의 반발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 새로운 입법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일본의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중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재 하는 바, 올바른 정의와 바로되는 개혁은 자신부터 변화하고 개혁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각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주요 내용

1. 총 칙

가. 목 적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도 등에 관한 규칙, 사료의 공정규격의 설정 및 이에 따른 검정 등을 행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함으로서 공공 안전의 확보와 축산물 등의 생산 안정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

- ① “사료”라 함은 가축 등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② “사료첨가물”이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방지 및 농림수산성령에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혼합·첨운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농업자재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
- ③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사료첨가물 : 145종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 항산화제 등 17종
 - 사료의 영양성분 및 기타의 유효성분의 보충 : 비타민 등 75종
 - 사료중에 함유된 영양성분 및 유효이용 촉진 : 항생·항균제 등 53종

2. 사료제조 등에 관한 규제

가. 기준 및 규격

농림수산대신은 농업자재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사료 및 사료첨가물로 인하여 유해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가축 등에 피해가 생김으로써 축산물 생산에 차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나 사료첨가물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이나 표시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사료의 및 사료첨가물의 성분에 다른 규격을 정할 수 있다.

나. 검정 및 표시

- ① 유해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료 및 사료첨가물(“특정사료 등”)은 농림수산성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 검정에 합격한 표시 없이 판매 되어서는 아니된다.
 - 특정사료와 특정첨가물의 검정은 “사료검사소”가 실시
 -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기재
 - 특정사료의 경우 제조단위(최대 50톤)별로 검정을 필하여야 함.
 - 검정에 사용한 보존품은 1년간 보관
 - 검정의 기록은 특정첨가물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간 보존
- ② 농림수산성 정령이 정하는 특정사료
 - 낙화생유 찌꺼기
 - 항균성물질
- ③ 사료 제조관리자
 - 농림수산성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료관리자로 지정
 - 사료 관리자의 자격
 - ① 수의사 및 약사
 - ① 약학, 수의학, 축산수산학, 농화학을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자
 - ②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조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사료 제조관리자가 특별한 주의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료

- ① 낙화생유 찌꺼기, 요소 등을 원료로 한 사료
- ② 항균성물질
- ③ 규격설정 사료

3. 사료의 공정규격 및 표시기준

가. 공정 규격

① 사료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종류에 따른 영양성분량의 최대량이나 최소량 또는 기타 다른 영양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함.

- 공정규격 설정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청취

② 규격 적합표시

-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검정방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정해진 사료(“규격설정사료”)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격설정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공정규격에 적합하다는 특별한 표시 (“규격적합표시”) 부착

③ 규격설정사료

- 소·돼지·닭 및 메추리에 공급되는 배합사료
- 방어·참돔·잉어·뱀장어·송어 및 은어에 공급되는 배합사료
- 옥수수와 어분을 배합한 사료
- 어즙을 밀기울·쌀겨 등에 흡착시킨 사료
- 어분
- 우모분

나. 표시의 기준

① 농림수산대신은 사료의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그 영양성분에 관한 품질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곤란한 사료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정령으로 다음의 표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표시의 기준을 정하여야 할 사료

- 대두유찌꺼기, 어분, 우모분, 육골분, 육분 또는 혈분
- 2종 이상의 사료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경우

③ 규격 표시의 내용

- “규격적합”이라는 문자 또는 그 약자
- 규격을 표시한 농림수산성의 기관, 도도부현 또는 지정 검정기관의 명칭

4. 지정 검정기관

가. 지정 검정기관 : 농림수산대신은 다음기준에 의하여 검정기관 지정

- ① 농림수산성 성령에서 정하는 기계·기구 및 기타 설비 구비

- ② 농림수산성 성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인원의 검정인원 보유
- ③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원 및 검정시행자가 검정의 공정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④ 검정업무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검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⑤ 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적 자산을 갖출 것
- ⑥ 검정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초래할 요소가 없을 것

나. 입회 검사

농림수산대신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그리고 사료 또는 사료첨가물의 운송업자, 운송취급업자 및 창고업자, 운송차량 등에 대하여 사료나 사료첨가물과 그 원료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수거토록 함.

5. 기타 사료첨가물 관련 법령

가.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농림수산성령)

- 사료의 성분 규격 및 제조 등의 방법과 표시기준 규정

나. 사료첨가물 지정 고시(농림수산성 고시)

다.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항균성 물질 제제를 정한 건(농림수산성 고시)

라. 인정기술의 기준을 정한 건(농림수산성 고시)

- 제조·보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인정 기술적 기준
- 품질관리 조직 및 실시 방법
- 품질관련 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인원수

마. 사료첨가물 평가 기준

○ 일반 사료첨가물의 기준 조건

- 효능에 관한 조건, 잔류에 관한 조건, 안전에 관한 조건,

○ 평가에 필요한 사항

-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규격에 관한 사항, 효능에 관한 사항, 잔류성에 관한 사항.

○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생균제의 평가 기준

- ① 기원 또는 발견경위와 외국에서의 허가, 사용현황

○ 규격에 관한 사항

- 명칭, 제조방법, 세균학적 성상, 사료중의 정량법,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경시적 변화, 제조용 종균의 규격, 품질관리 방법, 물리적 성상

○ 효능에 관한 사항

○ 안전에 관한 사항

- 균의 종류 방법, 독성시험, 대상가축에 대한 사양시험, 자연환경 영향 평가시험

□ 일본 사료수급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정부가 수입사료의 매입, 보관 및 매도를 행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할 것을 목적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수입사료」라고 함은 수입에 관계되는 맥류, 밀기울, 옥수수 그외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사료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료수급계획) 농림수산대신은 매년 수입사료의 매입, 보관 및 매도에 관한 계획(이하 사료수급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한다.

제4조(사료매입) ①정부는 사료수급계획에 기초하여 식량관리법(1942 법률 제40호)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맥 및 소맥을 매입하고 그외 수입사료(대맥 및 소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항 및 제8조의2 제1항에서와 같다)를 매입할 수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매입은 입찰방법에 있어 일반경쟁계약에 따라 되어야만 한다. 다만 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사료매도) ①정부는 사료수급계획에 기초하여 그 보관한 수입사료를 매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매도는 입찰방법에 있어 일반경쟁계약에 따라 되어야만 한다. 다만 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매도를 할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사료 원가에 상관없이 국내의 사료 시가, 그외의 경제사정을 참고하고 축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취지로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사료의 대맥 및 소맥의 매도에 대해서는 식량관리법 제4조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제6조(매도 및 부대조건)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사료를 매도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매도에 관계되는 수입사료(이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조한 사료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사용에 관련하여 지역 또는 시기의 지정, 가격의 제한 그외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붙이고 수입사료의 매도를 받은자가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에 관계되는 수입사료의 매도가격에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액의 위약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③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붙이고 수입사료의 매도를 받은자가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후 2년간 제4조 제2항 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에 따른 경쟁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사료 및 수급을 상대방이 강요한 경우의 특례) ①정부는 국내 사료수급을 상대방이 강요하고 가격을 현저하게 혼란시킬 경우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정령으로 정한 심의회에 자문하여 그 소유에 관한 소맥을 매도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소맥으로부터 생산된 밀기울의 양도 또는 사용에 관련하여 지역 또는 시기의 지정, 가격제한 그외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전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 소맥의 매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매도 및 가격등의 공표) 정부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를 매도할때 또는 전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 소맥을 매도할때 성령으로 정한 경우에 따르고 지체없이 매도한 수입사료의 가격, 품목, 수량, 조건 그외 필요한 사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조건을 매수인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의 2(보관사료의 매환 및 교환) ①정부는 보관한 수입사료의 품질에 있어 현저하게 손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필요할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해당 수입사료를 그 사료와 동일 품목으로 동일 수량사료에 매환하고 이것과 교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매환을 위해 매도 및 매입은 동시기에 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환을 할 경우에 그 가격이 같지 않을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환 또는 교환에 있어 정부가 취득한 사료는 이 법률 적용에 대해서 수입사료로 인정한다.

제9조(보고의 정취등) ①농림수산대신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성령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 수입사료의 수입업자, 창고업자, 판매업자, 가공업자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 소맥의 매도를 받은자로부터 수입사료 또는 조건을 붙이고 매도를 받은 소맥으로부터 생산된 밀기울의 재고, 판매의 수량, 가격 그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당직원에게 사무소, 사업장, 창고 그외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고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입조사를 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정한 신분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고 동시에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의 권한은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인정하거나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임사항) 이 법률에 있어서 정령에 위임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목적, 수속 그 외의 그 집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률의 시행기일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고 120일을 넘지않는 기간내에 정령으로 정한다.